

출생아 산업단지, 생산의 장 넘어 관광·여가 공간 돼야

강원일보 오피니언

산업단지는 지난 50여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부의 산업단지 정책은 적기·적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값싸게 용지를 공급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고, 산업 용지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개발연대에는 더욱 두드러졌다.

최근 들어 산업의 지식집약화, 산업 기술의 융·복합화, 기업 규모의 소규모화, 기업의 해외 이전, 기존 단지의 노후화·도심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로 산업단지에 대한 역할 재정립과 관리 기능의 고도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업단지는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강원자치도 내 산업단지 수와 입주업체 수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막대한 산업단지 부족이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들의 지역 이탈 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산업단지 공단의 '2023년 1분기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에 따르면 도내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1개, 일반산업단지 25개,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 농공단지 45개로 총 77개다.

이는 산단이 가장 많은 경남권(부산·울산 포함) 274개의 28%에 불과한 수치다. 또 산단 입주업체 수도 서울의 경우 4곳에 11만9,652개에 달하지만 강원자치도는 서울의 1.7%에 불과한 2,403개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인원 수도 서울이 총 19만393명인 데 비해 도는 3만2,903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는 오래된 산업단지가 다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도심이나 시가지에 접하고 있어 입지 특성상 고부가가치의 도시형, 융합형 신산업들에 적합하다. 기능이나 지원시설들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업종들을 수용해 새로운 지역성장 엔진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많은 과제가 있지만 우선 단지별로 명확한 산업발전 비전을 수립하고 업종 고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식산업 업체들이 입주하기에 적합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의 조성이나 단지 내 기업지원, 문화·복지시설 등 기능을 보강하고 혁신을 위한 산학연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미니클러스터 구축을 미뤄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신규 산업단지 확충은 바뀐 대내외적 여건을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 그간의 산업단지를 재점검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산업단지는 생산의 장을 넘어 관광·여가의 공간이 돼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일터에서 배움터와 즐길 터가 될 때 지역의 경제는 활성화되고 숨통이 트인다.

출처:강원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II

윤곽 드러난 연금 개혁안,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관건

동아일보 오피니언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각각의 변수를 조합해 다양한 시나리오 도출 가능

	현행	재정 안정화 방안			노후소득 보장 방안
보험료율	9%	1안 12%	2안 15%	3안 18% 인상	13% 인상
소득대체율	40%	현행 40% 유지			1안 45% 2안 50% 인상
기금운용수익률	4.5%	1안 5.0%	2안 5.5% 상향	현재 근로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연금 보험료를 자본소득에도 적용하는 등의 추가 방안 필요하다고 제안	
수급 개시 연령	65세	1안 66세	2안 67세 3안 68세 상향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보험료율이 현재의 9%에서 최소 3%포인트 올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정부는 오늘 제출되는 재계위 보고서를 토대로 30일 공청회를 열고, 10월 중에는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 이상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연금개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보고서는 보험료율을 높여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 보장에 초점을 둔 방안을 제시했다. 크기는 두 가지지만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경우의 수는 수십 가지다.

궁극적인 선택은 정부의 몫이다. 충분히 숙고하되 단일안을 도출해야 한다. 5년 전 정부는 국회에 4가지 안을 제출하며 책임을 떠넘겼고, 국회도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논의를 미루면서 개혁은 호지부지됐다.

현 정부 들어서도 정부와 정치권 모두 연금개혁을 후순위로 미룬 채 시간만 끌고 있다. 임기 초부터 연금개혁을 강조하던 정부는 구체적 방향성 없이 10월 정부안을 제출한다는 일정표만 내놓은 채 뒷짐을 저 왔다.

그나마 최종안은 국회 논의 결과를 보고 2027년에나 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연금개혁을 논의하던 국회는 올해 4월까지 개혁안을 내놓겠다더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들연 발을 빼고 정부로 공을 넘겼다.

연금개혁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니다. 이달 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성인 1,026명 대상의 국민연금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70.8%가 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이었다.

더 내고 늦게 받으라는 걸 반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연금 고갈을 방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연금재정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함을 끈질기게 설득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다.

연금개혁이 미뤄질수록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개혁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어설픈 홍보로 역풍을 맞은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실패를 교훈 삼아 소통 전략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 올해가 연금개혁의 원년이 되느냐 마느냐는 정부의 의지와 실행력에 달렸다.

출처:동아일보 오피니언

국민권익위원회

27만 명에게 ‘공공기관 청렴수준’ 직접 묻는다

- 폭염 대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통한 보호대책 추진 중 -

- 62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약 27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2022년부터 기관 청렴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개편한 종합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올해는 시행 2년째이다.
 - 종합청렴도는 기관별 청렴수준을 특정요소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 ▲청렴체감도는 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공직자의 인식과 경험 설문조사 결과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지표 이행실적 ▲부패실태 평가는 부패행위 징계, 감사 등 기관에서 발생한 실제 부패사건을 각각 반영해 평가한다.
 - * 종합청렴도 점수(100%) = 청렴체감도(60%) + 청렴노력도(40%) - 부패실태 평가(최대 10%)
 - 설문조사는 8월부터 11월, 실적평가는 10월부터 12월 중 실시하고, 최종결과는 기관유형별 1~5등급으로 올해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 올해 평가 대상기관은 16개 유형의 총 629개 기관으로 작년 대비 60개 기관 확대했으며, 특히 올해는 최초로 92개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시 75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국민 접점, 취약분야의 청렴수준 평가를 강화한다.

합계 (개)	중앙행정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 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	지방의회	
			광역	기초				Ⅰ (공기업)	Ⅱ (준정부)	Ⅲ (중점)	Ⅳ (지방 공사 ·공단)	Ⅴ (연구원)			광역	기초 (시)
	Ⅰ (장관급)	Ⅱ (차관급)		Ⅰ (시)	Ⅱ (군)	Ⅲ (구)										
629	25	21	17	75	82	69	17	32	55	45	40	21	16	22	17	75

- 청렴체감도 측정은 전화 또는 온라인(이메일, 모바일)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11월까지 실시된다.
 -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 조사를 기존 문자와 함께, 접근이 용이한 카카오톡까지 확대 활용해 응답자 편의와 응답률 제고를 도모한다.
 - 청렴체감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설문조사와는 달리, 평가 대상기간 동안 외부·내부 업무처리 과정을 직접 경험한 민원인과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에게 직접 부패인식과 경험을 물어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 또한, 응답자와 응답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모든 정보는 암호화돼 처리되므로 안심하고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의 부패수준을 진단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며, “응답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점검

- (건강기능식품)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 가능 -
- (화장품)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 금지 -
- (의료기기)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은 제품만 구매 -
- (의약품) 허가·신고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에 주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8월 28일부터 9월8일까지 집중점검 합니다.
 - * (식품) 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관련 제품, (의료기기) 혈압계, 체온계, 의료용흡인기 등 개인용 의료기기, (화장품)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바디워시, 바디스크림, (의약품) 구강 청결용 제품 중 구중청량제
-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입니다.
-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는 광고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됩니다.
 -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나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품질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효과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의약외품은 허가·신고받은 효능이나 성능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허가·신고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추석 명절 선물용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을 사전에 점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 2학기 시행

-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조언·주의·훈육·보상 방식 구체화 -
-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교원은 근무시간 외 상담 거부 가능 -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별도 제정…교육활동 침해 시 조치사항 규정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다.
-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연구, 현장간담회 등을 추진해 왔으며, 2학기 시행을 위해 오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였다.

1. 초·중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고시(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함께 지원해나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등을 통한 학생인권 오·남용 예방 :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또한, 학습동기 부여를 위하여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통합교육의 장면에서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고시(안)의 균형을 갖추었다.

2.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등

-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항 명시 :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교육활동 범위가 아닌 상담은 제한 : 아울러,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사전에 상담목적, 시간 등이 서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 교육활동의 범위가 아닌 사항,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 등

- 교육부는 8월 18일(금)부터 8월 28일(월)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하여 오는 9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금)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제작하여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하고,

-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책지원관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

 주 희 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I. 들어가며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으나, 대법원에서 지방자치법령상 근거가 부재하다는 사유로 무효 판결을 받아 무산됨(박순중, 2021: 120; 박순중·박노수, 2014:63)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행정수요 증대 및 다양성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좌관의 도입에 대하여 지방의회 등은 오랫동안 요구함
- 이에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 41조에 의하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었으며, 구체적 명칭은 ‘정책지원관’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36조)

지방의회에 대한 대규모 정책지원관의 도입으로 이에 대한 큰 기대와 반응에도 불구하고, 운영과정에서 혼란함과 성과에 대한 의구심 등이 제기되고 있음

- 광역의회 약 430명, 기초의회 약 1,460명 등 2,000명에 가까운 정책지원관이 지방의회에 도입됨에 따라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의 질제고 등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청년 등의 취업시장 활성화 등 정책지원관에 높은 기대감으로 제도가 출발함
- 그러나 구체적인 매뉴얼 등이 부재한 상태에서 짧은 기간 대규모로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책지원관의 배치, 업무의 배분 등의 문제로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임
- 이러한 혼란 속에서 정책지원관의 도입이 과연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지 등 제도의 성과 자체에 의구심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정책지원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 운영 1년 동안 발생한 주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II.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정책지원관의 주요 내용 및 운영현황

-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에서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음

• [표1] 정책지원관의 주요내용 •

구 분	법령명	내 용
설 치	지방자치법	제41조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u>정책지원 전문인력</u> 을 둘 수 있다.
명 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직무범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① (생략)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이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임용절차	지방자치법	제41조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 7급 이하 ⑥ 제6장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배치형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⑥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정책지원관의 총정수를 살펴보면, 광역의회 정책지원관은 제9기 전반기 의원정수 기준 432명이고, 기초의원은 8대 후반기 지방의회 의원정수 기준 1,467명임

• [표2] 정책지원관 총정수 현황 •

구 분	광 역		기 초	
	의원정수	정책지원관 총정수	의원정수	정책지원관 총정수
서울	112	55	423	212
부산	47	23	182	91
대구	32	16	116	58
인천	40	20	118	59
광주	23	11	68	34
대전	22	11	63	32
울산	22	11	50	25
세종	20	10	-	-
경기	156	78	447	224
강원	49	23	169	85
충북	35	17	132	66
충남	48	24	171	86
전북	40	20	197	99
전남	61	30	243	122
경북	61	30	284	142
경남	64	32	264	132
제주	45	21	-	-
계	877	432	2,927	1,467

- * 주 : 광역의회는 제9기 전반기 의원정수 기준이며, 기초의회는 제8기 후반기 지방의회 의원정수 기준임
- * 출처 : (광역의회)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 (조사일, 2023.01.19), 기초의회(행정안전부, 2022; 류준호, 2022: 414 재인용)

- 정책지원관의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의회의 경우 대부분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있으며, 울산·세종시의회는 담당관실에 (의회사무처), 서울시의회 등은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여 배치하고 있음
-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2023년 8월 현재 정책지원관의 운영과 관련한 별도 조례를 제정한 의회는 15개에 불과함(광역 2개, 기초 13개)
 -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경우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을 통하여 정책지원관의 구성·운영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대부분 구체적인 정책지원관의 신분이나 직급,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또한 별도로 조례로 제정한 경우에도 정책지원관의 직무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방자치법」 등에서 명치된 사항을 그대로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임

정책지원관 운영의 주요문제

- 정책지원관에 대한 명확한 업무 범위 및 내용 제시 미흡
 - 「지방자치법」 등은 정책지원관의 직무에 관하여 동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직무 범위 등은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같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것은 각 지방의회의 특성과 역량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그러나 정책지원관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각 지방의회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를 「지방자치법」 등과 같이 추상적·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배분에 대한 이해의 차이,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직무 범위에 대한 이해의 차이의 문제는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정책지원관에게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의원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쏠리면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빈번한 퇴사 등이 발생해 제도운영의 안정성까지 위협받고 있음
- 기존의 의정활동 지원 인력·조직과의 업무 중복
 - 기존의 지방의회에는 지방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 부서 및 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광역의회의 경우 입법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담당관 및 예산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담당관 등이 설치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광역의회의 경우 입법조사관 등의 별도의 지원인력을 두기도 함
 - 이렇게 기존의 지방의원에 대한 지원부서·인력이 있는 경우 정책지원관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내부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바, 이에 대한 업무조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노력은 미흡한 실정임

• [표3]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기구 비교 •

구 분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입법·예산지원 전문인력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68조	• 지방자치법 제41조 • 영 제36조	• 법적근거 없음(각 지방의회 조례 및 규칙)
정 의	•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	•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 정책연구위원(부산) • 입법조사관(서울, 경기) • 예산분석관(서울, 경기, 충남, 부산)
목 적	• 위원회 자치입법활동 지원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 입법·정책·예산분야
업 무	• 의원과 청원 등의 심사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 §47(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48(서류제출 요구) • §49(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50(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보고의 처리) • §51(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 §52(의회규칙) • §53(회의규칙)	• 시정/도정질문,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 업무보고 등 지원 •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등에서 업무규정
정 수	•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별표5]	• 의원정수 1/2 범위 내	• 지방의회 자율결정

* 출처 : 류준호(2022), p.395 재인용.

- 정책지원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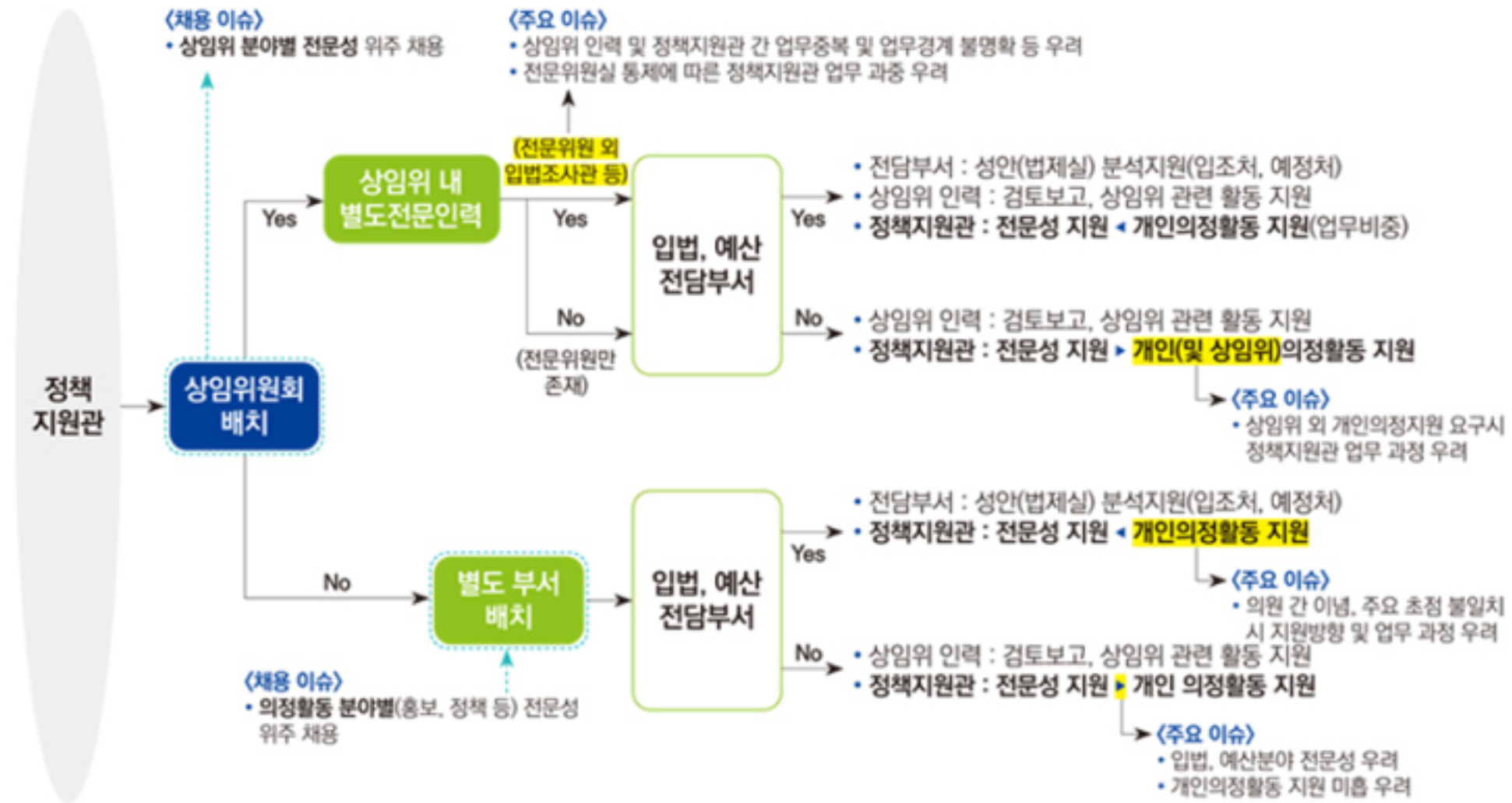
-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에 따라 상임위원회, 의회사무처 내 기존 부서, 의회사무처 내 별도 신설 부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배치되고 있음
- 그러나 어디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정책지원관에게 부여되는 업무의 차이가 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임
- 예컨대, 상임위원회에 배치될 경우 전문위원과의 업무 배분 및 감독권자에 대한 논의 등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여 조례의 성안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해당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위원에게 감독받는 비정상적인 운영이 발생하기도 함
- 정책지원관의 빈번한 퇴사 및 타 지방의회로의 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문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운영상의 혼란과 갈등은 결국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임기제공무원인 정책지원관의 잦은 이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운영 1년 동안 정책지원관의 이러한 잦은 이탈은 각종 언론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함
 - 이러한 잦은 이동은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정책지원관이 업무의 '경험'으로 인한 실질적 전문성보다는 단순히 '경력'으로 인한 형식적 전문성만 높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형식적 전문성은 결국 정책지원관이 실질적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할뿐더러 정책지원관 제도의 성과 및 실효성에 대한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수 있음

III. 지방의회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지원관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

-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관련하여 배치 장소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해야 함
 -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경우
 - 해당 상임위원들과의 보다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업무영역이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음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위원 등과의 업무 중복 및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칫 정책지원관이 위원회 업무와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지원을 동시에 하는 경우 업무과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처에 배치할 경우
 - 소속된 상임위원회와 별개로 지방의원 개인의 관심영역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며 조례 성안(정책지원관의 지원)과 검토과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이 분리됨에 따라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결 과정을 기대할 수 있음
 - 반면, 일부 정책지원관에게 업무가 편중될 우려가 있으며, 정책지원관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
- 정책지원관의 선발 단계에서 부터 정책지원관의 배치를 고려하여 차별적인 임용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영역에 대한 전문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지원관을 선발해야 함
 - 반면 의회사무처에 배치할 경우, 해당 의회에서 정책지원관에게 요구하는 기능을 구분하여 각 기능별 전문가를 선발해야 할 것임
 - 예컨대, 만약 의정활동의 지원을 입법지원, 정책지원, 예산지원, 홍보지원 등으로 구분한다면 각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예. 학력, 경력, 주요 성과물)을 갖춘 사람을 정책지원관으로 선발·채용해야 함
 - 실제로 사전에 정책지원관의 업무영역, 내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로 정책지원관을 선발함에 따라 실제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방의회가 기대한 역할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책지원관으로 인한 한계가 드러나기도 함
-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방의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에 어떠한 지원기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구체적으로 이하의 내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과 별도로 입법조사관과 같은 위원회 지원인력이 존재하는지 여부
 - 입법담당관, 예산담당관과 같은 지방의원의 의정기능을 지원하는 부서가 존재하는지 여부
- 정책지원관의 배치, 기존의 의정활동 지원기구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업무 배분 및 우선순위 부여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기존의 기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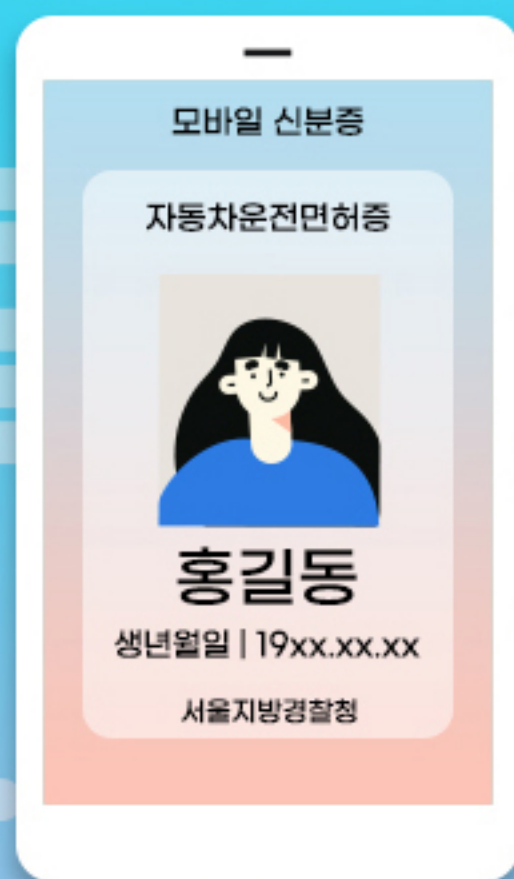
- 또한 처음부터 정책지원관에게 모든 의정활동을 지원업무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각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즉, 지방의회의 특성,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지원관이 더 전문적인 의정기능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둘 것 인지, 지방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에 보다 초점을 맞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그림1] 지방의회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지원관 업무 선정 절차도(예시) •



출처 :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필요한 정보만 꺼내 쓰세요!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이란? →

개인 스마트폰 안에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신원증명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고, 블록체인을 통해 신원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가능!



현재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차후 주민등록증 확대 예정!

모바일 신분증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



공공기관에서 민원처리 시



은행에서 금융업무에 신분증이 필요할 때



편의점, 무인자판기 등에서 성인확인 필요 시

온라인(정부24 등)에서 신원확인

앱으로 렌터카와 키포드 대여 시 면허확인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 어떻게 발급받을까요? →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도 발급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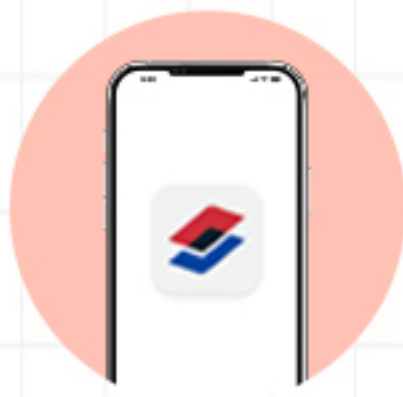
IC 운전면허증 태그



01 IC 운전면허증 신청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면허시험장, 경찰서 방문)



02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에서
IC운전면허증 방문수령



03 모바일 신분증 APP 설치



04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하여 본인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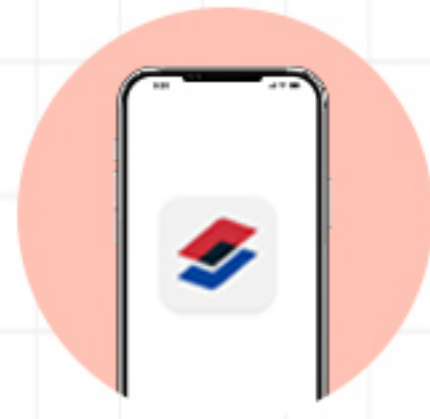


05 발급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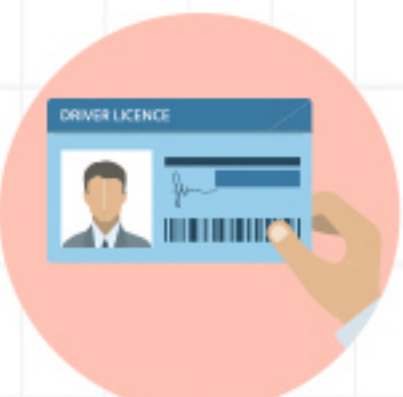
면허시험장 방문 발급



01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및
신청서 작성



02 모바일 신분증 APP 설치



03 접수 및 신원확인



04 1회용 발급 QR코드 촬영



05 발급완료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교체하였는데 재발급이 되나요? →



IC 운전면허증 소지자

스마트폰에 IC운전면허증
태그 및 본인인증하여
재발급 가능!



기존 운전면허증 소지자

운전면허시험장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후 창구에서
QR코드로 재발급 가능!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https://www.mobileid.go.kr/mip/hps/main.do>)를 참고하세요!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